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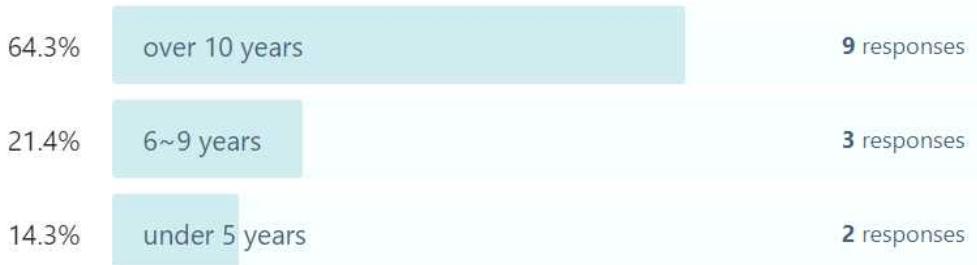
I. 설문 내용

1. 답변자 정보

- 참여기관:

ECPAT 사모아	ECPAT 나이지리아(WOCON)	ECPAT 인도네시아
ECPAT 태국 (Foundation)	ECPAT 룩셈부르크	ECPAT 스리랑카
ECPAT 스위스	ECPAT 보츠와나	ECPAT 모로코
ECPAT 말라위	ECPAT 케냐	ECPAT 벨기에
ECPAT 그리스	ECPAT 독일	ECPAT 오스트리아

- 경력



2. 사건 정보 :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사건 개요

- 2011년 8월 연예기획사 대표 M(당시 42세)는 자신의 아들(당시 13세)이 입원한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여학생 B(당시 15세)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임신에 이르게 함. B는 임신 상태에서 가출한 뒤 M와 한 달 동안 동거를 했지만 출산 직후 M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1심 법원은 징역 12년, 2심 법원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함. 결국 2017년 11월 무죄가 최종 확정.
- 대법원은 임신 중이던 B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M를 매일 같이 면회한 점,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 내용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대량으로 쓴 점, SNS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자기’, ‘남편’이라고 호칭하는 등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B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으며, ‘B가 M를 사랑한 것’이었다”고 판단.
- 하지만 B는 “M가 집요하게 편지를 쓰도록 강요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숙제’처럼 쓴 것”이라고 반박.

◆법원 재판에서 확인된 팩트

- 두 번째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42세의 M는 병원 엘레베이터 안에서 15세의 여중생 B

를 우연히 만났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명함을 건넨 B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도 심각하게 나빴음.

- M는 며칠 뒤 “내 조카(아들)를 소개해주겠다”며 B를 아무도 없는 병실로 불러내 B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입술에 키스를 함.

- M는 만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던 B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음.

- M는 그로부터 1주일쯤 뒤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킨 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

M는 B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엔 화를 내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함. 이에

- B가 자신의 손등을 커터칼로 그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내가 책임지겠다. 집에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가출해라.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조언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동거.

- M가 별건(사기·공갈·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되자 임신 상태였던 B는 출산 전까지 거의 매일(77번) M의 면회를 갖고 150통의 편지(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를 전달.

- B가 쓴 편지에는 ‘M를 사랑한다’ ‘함께 살고 싶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 등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여러 색깔의 펜을 이용하고 하트 표시 등 다양한 이모티콘과 스티커를 사용해 꾸며져 있었음.

- B는 평소에도 M를 ‘오빠’, ‘자기’, ‘남편’ 등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 ‘보고 싶다’, ‘절대 헤어지지 말자’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냄.

- 16살이 된 B는 출산 직후 성폭행 혐의로 M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M는 재판 과정 내내 “B와 연인 사이였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

3. 질의응답

질문 1	만약 이 사건이 귀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으리라고 보십니까?		
71.4%	guilty	10	responses
14.3%	innocent	2	responses
14.3%	Other	2	responses
유죄	사모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스위스, 모로코, 말라위, 케냐, 벨기에, 독일		
무죄	보츠와나(법률상 유죄이나 경제적 이유로 기소 취소 될 가능성 높음), 그리스		

기타	룩셈부르크(상황에 따라 다름), 오스트리아(확답할 수 없음)
----	-----------------------------------

질문 2	‘유죄’ 또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구체적 법률조항이나 실제 사례 등을 근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아	M이 B의 가족환경을 이용하여 성착취 행위로 유혹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법원은 M이 18세 이하 아동을 성착취 하였기 때문에 그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무리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로맨틱’한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를 고려한 조치이며, 아동이 본인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완벽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성인과의 성관계(혹은 성범죄)에서의 아동의 동의는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15세 이하 아동을 속여 성관계 하였으므로 유죄판결이 날것이다.
태국	M의 나이는 42세이고 아동은 겨우 15세이므로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룩셈부르크	유죄: M이 B에 대한 정신적 지배를 가진 점, 둘의 나이 차가 상당한 점 무죄: B가 M에게 많은 양의 편지를 쓰고 자주 찾아간 점 등에 의해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있음
스리랑카	16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는 불법(의제강간)이다.
스위스	성적동의연령이 16세이므로 형법(Criminal Law article 187, 189, 190)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보츠와나	보츠와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기소를 취하한 경우가 있었다.
모로코	모로코는 혼외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형법 490) 폭력 없이 동의하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도 무조건 범죄로 취급하여 한달에서 1년의 징역이 부과된다(폭력이 있는 성착취 및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의 징역으로 처벌이 늘어난다). M은 B와의 성관계를 찍고 유포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성착취(인신매매trafficking)으로 규정하여 5년~10년의 징역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M이 권력자이고 로비를 할 경제적 자원도 충분하다면 부패한 판사 등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다.
말라위	성적동의연령이 16세이기 때문이다.
케냐	M은 성적으로 동의가능하지 않은 B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시켰으므로 당연히 유죄이다.
벨기에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M이 성폭력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일

	어나지 않을 것이다. 벨기에에서는 16세 이하 아동은 성관계에 동의 할 수 없다.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만약 아동이 나이차가 5살 이상 나지 않고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경우는 품위훼손(<i>attentat à la pudeur</i>)로 처벌하게 된다. 품위 훼손(외설죄) 또한 중범죄로 취급한다. M의 경우 B와의 나이차가 5년 이상 나며 권력구도 하에 있던 사실 또한 증명 가능하다. 만약 B가 더 나이가 많았더라도 M과의 관계가 위계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온전한 동의를 내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M이 B에게 접근한 방법을 보더라도 M이 본인의 권력을 휘둘러 B를 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성적동의연령이 14세이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행위의 제재는 강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법정에서 아동의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사실만을 반영할 위험이 있다.
독일	독일의 판사는 모두 독립적이며, 아동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독일 헌법에 따라 14세 이하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학대법(Section 176 Criminal Code: Child abuse)과 청소년보호법(Section 182 CC: Abuse of juveniles)에 의해 유죄로 처벌될 것이다. 독일에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성인 쪽으로 명확하다. 독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9년 7월 가해자는 6년 징역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무죄: 성적동의연령이 14세인 점 (동의유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 유죄: M이 B에게 접근한 방식, B의 어려운 가족환경, B의 어린 나이 등이 M이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 B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고 증명함. 오스트리아 법 (Austrian Penal Code: 207b StGB Sexueller Missbrauch von Jugendlichen)에 의하면 14세~18세 아동의 성 착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질문 3	귀 국가에서 18세 미만 아동(유엔 아동권리협약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아동과 가해자 간의 '사랑' 여부가 사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모아	사모아 법(Samoa Crimes Act 2013)에 의하면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행위는 강간으로 고려됨
나이지리아	아동의 성폭력 피해 주장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아동은 이성적 판단과 결과에 대한 추론 등을 성인과 같이 해낼 수 없으므로 아동이 주장하는 '로맨틱한 관계'는 타당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 시에 고려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아동보호법 article 76D에 의하면 18세 이하 아동과 성관계 한 경우는 범죄로 취급된다. 위의 법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여 아동이 성관계 하도록 만들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 명시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아동을 속이거나 설득하여 성관계했을 경우 또한 범죄로 정의한다.

태국	15세 이상의 경우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날 수 있다. 형사법 276-281 조항의 15세 이상 여성에 대한 강간처벌법에 의하면, 아내가 아닌 여자와 협박, 폭력, 혹은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관계하였을 경우 4년~20년의 징역 및 8천~4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5세 이하의 여성과 성관계한 경우 아동의 동의유무에 관계없이 최고 10년의 징역 혹은 2만 바트의 벌금, 혹은 둘 다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아동의 동의 없이 강제로 강간한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및 3만 바트 혹은 둘 다의 처벌을 받는다.
룩셈부르크	안타깝게도 현재 룩셈부르크 법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또한 법학에 달렸다(법과 상황의 해석에 달렸다) 얼마 전 이웃국가인 프랑스에서는 13세 여아와 20세 남성의 관계가 ‘연인관계’였다고 판결이 났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로 강간으로 재판 결 난 경우가 있다.
스리랑카	16세~18세 아동의 경우에만 연인관계가 고려된다. 그러나 아동이 임신하였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 스리랑카에서 결혼가능연령이 18세 이상이기 때문인데, 아동이 임신하였음에도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	아동이 16세 이상일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로 규정되지만 남녀 모두 성적동의연령 이상이고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범죄로 치부되지 않는다.
보츠와나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보츠와나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족들이 돈을 받고 기소를 취하하는 경우들이 많다.
모로코	안타깝게도 모로코가 국제법을 받아들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2세~17세의 아동이 30세~40세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둘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말라위	안타깝게도 16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성범죄 관련 법률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케냐	절대, 절대 아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이고, 그러므로 그의 동의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M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는 그가 어른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B를 학대한 것이다.
벨기에	두 집대 사이의 관계 혹은 비슷한 나이 사이에서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사랑’ 여부가 고려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동의’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데, 동의란 성관계에 대한 개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벨기에 법에 따르면 16세 이하 아동과 5세 이상 차이나는 성인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아동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강간으로 치부한다.
그리스	안타깝게도 14세 이하 아동에게는 성착취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만, 14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덜하여 동의유무가 고려될 수 있다.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또래와 연인관계 내에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독일	전혀 아니다. 독일 형법에 따르면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4세 이상 아동의 경우 성적으로 동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특별 보호 팀 혹은 법 기관에서는 14세~18세 아동의 경우 쉽게 설득당하고 유혹당하거나 그루밍 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4세~18세의 성착취를 특별히 명시하는 207조항을 들어 보호하고 있다.
-------	--

질문 4	귀 국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그루밍’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모아	그렇다
나이지리아	당연히 그루밍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다룰 때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솔직히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아동인권법(Child rights Act)이 완벽히 시행되지 않는다. 많은 주들에서 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와 그 주의 형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허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루밍은 중요하게 취급된다.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면 설득에 의한 성관계 또한 범죄로 정의되므로 그루밍으로 아동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태국	태국 법에 의하면 그루밍은 불법이 아니다.
룩셈부르크	2011년 이후부터 룩셈부르크에서 그루밍은 범죄로 정의된다. 그러나 경찰이 신고를 받기 시작한 것은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법원도 그루밍에 대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스리랑카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루밍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만약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그루밍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스위스	그루밍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의 준비과정으로 규정하여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보츠와나	아직은 법률로 그루밍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보츠와나에서 온라인 그루밍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사정이다.
모로코	아니다. 모로코에서 그러한 아동 성착취는 대부분 가까운 관계의 성인이 저지르고, 권력행사를 통해 가해지기 때문에 그루밍보다 다른 요건에 더 초점을 맞춘다.
말라위	만약 아동이 16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아동이 동의한 평범한 연인관계라고 볼 가능성이 더 크다.
케냐	아동대상 그루밍은 불법이다. 케냐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6)이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아동대상 범죄는 모든 속임수(deceit)中最 가장 무거운 것으로 규정된다.
벨기에	2014년 벨기에 형법 중 성범죄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art. 377 ter),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 성인(가해자)가 아동과 접촉하여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행동하였을 경우(그루밍) 두 배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

	였다. 법률제정자들은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그루밍이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도록 하였다.
그리스	안타깝게도 성범죄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과 수사기록이 더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독일	N/A
오스트리아	그루밍 방지법 (208a StGB Initiation of sexual contact with underage = younger than 14 years)이 존재한다.

질문 5	귀 국가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장이나 성숙한 외모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모아	아니다
나이지리아	절대 아니다. 아동은 아동일 뿐이고(child is a child), 아동의 성숙도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 몇몇 법률은 아직 아동의 동의사실을 중요시 여기고는 있다.(다른 법률은 동의보다는 아동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18세 이하 아동은 무조건 아동으로 치부되며 성숙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태국	그렇지 않다. 아동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룩셈부르크	아니다. 실제 나이만 고려된다.
스리랑카	중요하지 않다.
스위스	아니다. 성숙도와 상관없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것은 나이가 더 많은 쪽(성인)의 책임이다.
보츠와나	안타깝게도 그렇다. 사례가 법원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법원에 방문할 때에는 좀 더 성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성착취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아동이 훨씬 어렸지만, 아동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동의 성숙도를 보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전 사례의 경우 피해발생 3년 후 법원에서는 남성이 성착취 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동이 성숙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모로코	모로코에서 아동의 정의는 주관적인 편이다. 아동이 신체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 성인으로 보며, 아동의 권리보호와 동의유무는 모로코 문화에서는 아직까지도 낯선 이야기다.
말라위	아니다. 실제 나이만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캐나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캐나다 성범죄법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다른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최하 무기징역에 처하며, 13세~15세의 경우 최하 20년의 징역, 16세~18세의 경우 최하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벨기에	벨기에에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성숙도는 법적 조치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법은 모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미성년자 아동의 실제 나이만이 고려된다.
그리스	그렇다. 아동의 성숙도는 미성년자의 동의유무를 결정할 때에 고려되는 편이다.
독일	아니다. 형법에 가해자의 책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N/A

질문 6	위 사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8세 이하 아동의 성보호 필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사모아	누구든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성행위를 목격할 경우, 그것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과 그 외 아동보호에 어긋나는 행위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지 유무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이지리아	아동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위 사례처럼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인권사회운동가들이 아동이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를 입는 경우 반대의견을 내며 싸우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18세 이하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아동친화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아동이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아동은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억제효과를 위해서라도 매우 강한 처벌 혹은 피해자에게 큰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추가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해자들을 성범죄자로 등록해 범죄자가 다른 도시 혹은 나라로 이동할 경우 그 지역의 경찰이 그를 주시하여 추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국	B는 UN협약의 기준인 18세 이하의 아동이기 때문에(15세) 보호받아야 한다. 18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반의사불법죄로 진행할 수 있다. (원문: compoundable offence 피해자가 가해자와 처벌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범죄)
룩셈부르크	B는 확실히 M에게 정신적으로 조종당한(manipulated)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쓰거나 M을 방문하도록 물리적 강제는 없었으나, B는 그녀의 아

	버지뻘인 M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위 사건은 M이 B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이라 판단되며, M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	첫째로 미성년자 아동과 관계하는 것은 범죄이며, M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B의 임신과 출산은 M과의 성관계를 증명하며, M이 둘이 친구였고 B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하더라도 B가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죄이다. 만약 M이 친부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DNA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스위스	16세~18세 이하 아동들도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스위스에서도 16세 이상 아동은 성적동의연령으로 규정되고 있다.
보츠와나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아동을 많이 도와주고 기소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가해자가 경제적 이권으로 인해 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무고죄는 아동성착취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 가해자가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아동이 거짓말로 성인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고 몰아가기 때문이다. 아동친화적인 법원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동은 법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아직 보츠와나의 사회복지사들은 법정에서 아동 대신 증언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의 재판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모로코	15세 사춘기 여자아이인 B는 M과 사랑에 빠졌다 착각했을 수도 있고, 성과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나이이다. 그것은 B의 나이에 있어 자연스러운 것이고 범죄가 아니다. M은 본인의 성적 쾌락을 위해 B의 이러한 상태를 사용하여 통제하였다. M이 정신적 문제가 있어 정말 B와 연인관계였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의 과거 범죄력과 행동을 보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B가 병원에 있었을 때 아동보호단체가 개입하여 B를 보호했어야 한다. B가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한국의 아동 보호단체 및 사회단체에서의 역할의 부재로 느껴진다. B에게는 심리학적 지원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는 것도 의아스럽다.
말라위	위의 사례는 현법재판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위 사건은 낮은 성적동의연령으로 인해 아동을 바라보는 법적 시각이 영향을 받은 사례이며,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기준(낮은 동의연령)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재개정 및 아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법은 18세 이하 아동의 성적학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케냐	위 사례는 아동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사건이다. M은 B와의 연인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B는 미성년자이며 사랑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줄 수 없는 나이이다. B는 불필요한 재판으로 고통 받기보다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법적 수행을 진행해야 한다. B는 거짓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B는 아동이다! M은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죄로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

벨기에	위 사례는 아동보호의 부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체계와 비교하면 벨기에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성적동의연령을 14세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아동 보호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6세~18세 아동의 성적동의를 인정하는 것을 일정 나이차 이내로 제한하고 권력관계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을 적용한다면,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 나은 아동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에게 이러한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동을 낙인찍지 않는 법제도를 구성하여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독일	위 사례는 아동보호법과 국제 아동인권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반하는 사례이다.
오스트리아	나는 아동의 성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오스트리아 법을 찬성한다. 그를 위해 올바른 성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유는 법적 보호가 동반되어야 한다. 14세~18세 아동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서적 신체적으로 유혹당하고 조종당하거나 그루밍 당할 위험이 크다. 몇몇 국가들은 나이차에 제한을 두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나는 그러한 법을 존중한다. 연인관계를 주장하려면 나이차가 10살 이상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질문 7	귀 국가에서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동의 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모아	[National Child Care & Protection Policy] [National Child Care & Protection Bill]
나이지리아	[Trafficking in Persons (Prohibition) Enforcement & Administration Act 2015], [Child Rights Act], [Violence Against Persons Prohibition Act(VAPP)] *아동인신매매(성매매) 사례 : 15세 아동을 부모와 이모가 속여 성매매를 통해 착취한 사례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준다고 속여 아프리카 대륙 내 다른 나라로 팔려간 사례임. 아동은 이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도착하여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부모님은 이제부터 성매매가 새로운 직업이 될거라며 아동을 방치함. (아동은 secondary school을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계획중이었음) 강제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아동은 첫째날 22명의 남자를 배정받았고, 둘째날 18명, 그리고 셋째날 20번째 남성이 다녀간 이후에 참지 못하고 알몸으로 뛰쳐나와 근처 풀숲에 뛰어들어 탈출함. 약 3시간 경을 맨발로 헤매던 아동은 교회에서 저녁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던 목사님에게 발견되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 의료조치를 받음. 이후 목사님이 필요한 회복프로그램 제공과 법적

	조치를 위하여 지역 민간협력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연락하여 아동을 구조하고 아동의 부모에게 법적조치를 취함. 아동은 쉘터로 이송되어 보호받았고, 현재는 국제 기부금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2번에 걸쳐 아동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대상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창출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최하 10년의 수감 등 강력한 처벌을 제정하여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려 노력하였다. 엑팟 인도네시아는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며 법률 전문가와 사회복지사들과 협력하여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고 가해자가 적합하게 처벌받도록 일하고 있다.
태국	-
룩셈부르크	아직 아동의 성보호를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하는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타국에 비해 조금 늦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법은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18세 미만 아동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미성년자 결혼이 발생하고 있다.
스위스	형법(Criminal law) 아동보호제도(Child protection systems)
보츠와나	아동법(Children's Act)이 존재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가해자 정보 시스템도 있지만 잘 적용되지 않는 설정임.
모로코	모로코에는 정확한 보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많은 일을 한다. 법적으로는 형법과 인신매매 방지법이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결혼과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는 가족법으로 인해 많은 아동의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만약 아동대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민간에서 아동단체에 연락하여 아동단체가 법적으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지원을 한다.
말라위	말라위 헌법은 아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올렸고, 형사법상의 성적 동의연령은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13세에서 16세로 상향시켰다. 그리고 이제 말라위 정부는 법적 아동의 연령을 모두 일치시키려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라위 헌법의 결혼가능연령 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케냐	케냐 헌법(Constitution of Kenya) 2010,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6, 아동법(Children Act) 2001. 케냐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판례가 많이 있다. 그중에는 100년 징역을 받은 경우도 있다.
벨기에	벨기에 형법(Criminal Code) article 372 ~ 383, article 433 (성적학대, 아동성착취,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등)

그리스	아동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나 정신의학자가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2차 피해(re-traumatization)이 고려된다 는 전문가의 심리진단이 있다면 아동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성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쉘터가 오랜기간 존재해 왔으며, NGO들을 통 한 무료 법적 지원도 주어진다.
독일	<p>Section 174 Criminal Code: Abuse of position of trust (신뢰 관계에서의 학대행위)</p> <p>Section 176 Criminal Code: child abuse (아동학대)</p> <p>Section 182 Criminal Code: Abuse of juveniles (청소년학대)</p> <p>Section 235 CC: Abduction of minors from the care of their parents (보호자/부모로부터 아동을 납치/데려가는 행위)</p>
오스트리아	<p>여러 법들이 있지만 온라인 안전을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보호제도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에 완전한 아동 성 보호가 실행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를 보장하는 법이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도입되고 있지는 않다.</p> <p>보호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자/아동대상 성학대 (206 StGB sexual abuse/several sexual abuse of a child; of a young person) -14세 미만 아동의 대한 성학대 (207 StGB sexual abuse of an underaged person = below 14 years) -미성년자 포르노 (207a StGB pornographic depiction of minors) -청소년 성보호법 (207b StGB sexual abuse of a young person=between 14 and 18 years) -1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도덕적 위험 (208 StGB Moral endangering of a person younger than 16 years) -그루밍 방지법 (208a StGB Initiation of sexual contact with underage = younger than 14 years)

질문 8	귀 국가의 현행 의제강간(성교 동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사모아	18세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공식 성적동의연령은 11세이지만, 성매매와 연관된 아동은 16세까지 보호함. 그리고 각 주마다 동의연령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음. 많은 주가 18세로 측정하는 추세.
인도네시아	결혼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만 여성 16세, 남성 19세. 결혼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성의 결혼가능 연령이 18세 이하이므로 UN 아동 권리협약과 아동보호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엑팟 인도네시아는 예전부터 결혼 법을 개정하여 최소 결혼가능연령을 18세로 올리도록 주장하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중이다.
태국	15세. 현재 법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성정동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와 성관계 한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거나 그에 준하는 지역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아동과 관계하는 것은 아동의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반의사불법죄로 진행 가능하다.
룩셈부르크	16세. 더하여 16세~18세 아동의 성착취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동의 유무는 보통 고려되지 않는 편이다.
스리랑카	16세
스위스	16세
보츠와나	18세
모로코	존재하지 않음. 혼외 모든 성관계는 불법이므로 '성적동의'에 관련한 법이 없다. 성인의 기준은 18세이다. 형법상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10년에서 20년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제대로 본인을 변호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 판단, 증명된 학대 1건당 1년을 부여한다. 또한 5년 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기소취소 하는 법이 폐지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아동의 순결성을 문제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말라위	성적동의연령은 16세이다. 그 이상의 경우 사실에 근거한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케냐	14세이지만 18세로 올리려고 진행 중이다.
벨기에	14세가 의제강간연령이었으나, 요즘은 14세도 성적 동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고 여기는 추세다. 그러나 그것은 아동과의 나이차가 5세를 넘지 않고 권력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아직 그렇게 개정되지는 않았음. 이야기만 나오는 추세) 14세~16세 아동의 경우 외설죄(indecent assault)에 해당한다. 16세 이상의 아동은 성적 동의연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18세 이하 아동의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6세~18세 아동과의 대가성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 (14세 이하 무조건 처벌, 14세~16세 미성년자간 성행위의 경우 외설죄)
그리스	15세
독일	의제강간연령은 14세이지만 기타 법들이 성인과 아동간의 성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1) 14세 이상 아동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어떠한 이득이 주어져서는 안되며 곤경한 상태를 빌미로 성착취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2) 21세 이상의 성인은 16세 이하 아동의 성적 동의 가능 유무를 이용하여 그를 성적으로 착취하여선 안된다. 3) 신뢰관계 및 보호관계에 있는 아동과의 성행위를 금지한다.

오스트리아	14세. 그러나 14세~18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을 따로 두고 있다. (sexual abuse of a young person between 14 and 18 years, Moral endangering of a person younger than 16 years)
-------	--

질문 9	위의 의제강간 연령기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국가에서 의제강간 연령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상향 혹은 하향됐습니까? (사례 : 1992년 11월, 15세→16세로 상향 입법안 통과, 특정 아동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여론 조성(이유))
사모아	The Crime Act 2013은 1961년에 제정된 Crimes ordinance을 대체하는 형법으로 다른 관련법들도 개정하였다. 그 법에 의해 의제강간연령은 18세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6세~8세의 어린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필요성을 느껴 개정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아직 나이지리아 법률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 각 주의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관찰하자면 점차 많은 주가 18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법에는 결혼상대가 아닌 미성년자와 관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의제강간법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태국	15세는 태국법에서 성관계 유무를 동의하기에 충분히 성숙하다 생각되는 최하의 나이이다. 그보다 어린 아동은 성적동의를 내릴 만큼 성숙하다 정의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꽤 오래전부터 16세를 기준으로 잡아왔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형법에 의하면,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관계는 동의유무 상관없이 범죄이다. 그 이유는 법이 16세 미만 아동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내릴 만큼 법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스리랑카 법은 18세 미만 여아를 강간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스위스	정확한 역사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16세로 정해져 왔다.
보츠와나	모르겠음
모로코	(의제강간법이 없으니 관련된 법에 관해 설명) 가해자와 피해자의 결혼을 권장하는 법이 폐지된 이유는 한 피해자가 결국 자살한 것이 언론에 크게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모로코는 새로운 헌법을 수립했는데, 그때 국제법의 기준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내 헌법 및 아동 관련 법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현재 우리도 국회와 법무부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명시해주기를 요청 중인데, 판사가 법률을 임의로 판단해 편견 섞인 판결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말라위	형법상 성적동의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으며, 지금은 18세로 올리기 위해 법적 개정을 추진 중이다.
케냐	아동 성착취 사례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처음 성적동의연령은 12세였으나, 14세로 상향되었고, 지금은 18세

	로 상향시키는 의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중이다.
벨기에	여러 소녀들을 강간살인 한 마르트 뒤트르의 사건으로 인해 벨기에 법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현재는 14세~16세 아동이 5세 나이차 이내, 가족관계가 아닐 것, 권력관계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성적 동의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앞서 말한 법적 조치도 많이 변경될 수 있다.
그리스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
독일	N/A
오스트리아	N/A

질문 10	귀 국가에서 강간의 구성요건은 무엇입니까? 한국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모아	사모아 법에 의하면 '성폭력'이란 1)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행위 혹은 2) 타인과 합법적이지 않은 성적접촉(sexual connection)을 갖는 것을 말함
나이지리아	각 주마다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정확히 답할 수 없음.
인도네시아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진단과 피해자의 증언, 추가 증거물 등 정밀한 증거들을 필요로 한다. 아동대상의 성범죄의 경우, 심리전문가에 의한 아동의 심리검사결과가 강간주장의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심리전문가의 검사결과가 물적 증거들과 맞아야 한다.
태국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성관계 (18세 이상의 경우). 15세 미만은 동의유무 상관없이 처벌. 15~18세 아동의 경우 동의유무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로 수사진행 가능하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접촉은 강간으로 규정한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형법(Penal Code) 565B에 따르면, 심각한 성적학대(Grave sexual abuse)란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성기, 신체의 다른 부위 혹은 도구를 타인의 성기, 항문, 구강 혹은 다른 신체부위에 동의 없이 삽입 혹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유무 상관없이 성적학대로 규정한다. 또한 폭력, 위협, 협박 등을 통해 상대에게서 동의를 받아낸 경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의유무 관계없이 처벌한다.
스위스	폭력, 협박, 심리적 압박이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강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된다.
보츠와나	피해자 나이, 동의 유무, 여성의 특성(애인의 유무 등)을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용하기도 한다.

모로코	위와 같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녀/그가 최대한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말라위	실질적 성기의 삽입 혹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증명한다.
케냐	성기삽입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피해자의 옷을 비롯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포함된다.
벨기에	동의 없는 성기삽입. 성기 삽입(penetration)에 대한 해석은 광범위한데, 얼마 전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거리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인정하였다.
그리스	폭력의 증거(멍, 상처 등)과 피해자의 저항 유무가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성기삽입 유무가 법정에서 중요 증거로 작용한다.
독일	N/A
오스트리아	N/A

질문 11	위의 강간구성요건이 성인 피해자와 아동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사모아	아니다
나이지리아	잘 모르겠다.
인도네시아	물적 증거물 제출에 대해서는 아동과 성인이 같지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심리전문가들이 개입하여 아동의 트라우마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술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한다. 그리고 심리학자 중 전문가 증인(감정인:expert witness)가 아동 대신 재판에서 증언하기도 한다.
태국	아니다. 아동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	그렇지 않으며, 아동의 경우 가해자의 나이 또한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스리랑카	아니다.
스위스	강간의 구성요건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같다.
보츠와나	강간 구성요건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같다.
모로코	그렇다. (결혼유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정단계에서 '동의'라는 개념이 간혹 잊히기 때문이다.
말라위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납치 혹은 친숙한 환경의 제공(그루밍) 등이 추

	가로 고려된다.
캐나다	같다.
벨기에	아니다. 아동의 경우 '동의'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16세 이하 아동의 경우 합법적 동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 강간구성요소는 같지만 처벌은 훨씬 더 중하다.
그리스	아동의 경우 동의유무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하기 더 쉽다.
독일	N/A
오스트리아	N/A

질문 12	한국의 사례와 비슷한 각국의 사건 및 판결사례
사모아	N/A
나이지리아	N/A
인도네시아	<p>1)사건 날짜: 2013년 11월 ~ 2014년 3월</p> <p>2)판결 날짜: 2015년 1월 19일</p> <p>3)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인터넷 채팅 상에서 본인을 여성 의사로 속여 사춘기 여아들에게 2차 성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다며 접근. 몇 번의 대화를 통해 아동들이 본인을 여성 의사라고 오해하도록 만든 뒤 2차 성징 상태를 봐주겠다며 아동들의 몸과 생식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만듦. 이후 아동들의 사진을 평소 본인이 알고 있던 소아성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함.</p> <p>4)피해자(아동)의 주장: 아동들은 상대가 여성 의사인척 하였기에 남성인 줄 몰랐으며, 성장기 여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여성 의사라고 믿고 신뢰하여 사진을 보낸 것임.</p> <p>5)가해자의 주장:</p> <p>6)검사의 주장: 가해자는 과거에도 온라인, 전자기기를 이용한 아동포르노 제작 및 유포 죄가 있으며, 가해자는 12세~15세의 여아에게 성적 흥분을 느껴 범죄한 것임.</p> <p>7)법정의 최종판결: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루피아 (벌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추가)</p> <p>8)판결의 이유: 2008년 포르노그래피 법의 First Article 27 paragraph 1 & Article 45 paragraph 1 of RI Law Number 11 / 형사법 Article 65 paragraph 1 (전자정보를 이용한 범죄, 나체 및 성기가 드러난 음란물 및 아동포르노 제작 및 유포죄)</p> <p>9)관련 보도자료:</p>
태국	N/A

룩셈부르크	N/A
스리랑카	피해자 동의없이 사례공유 불가
스위스	N/A
보츠와나	N/A
모로코	사용 가능한 자료 없음
말라위	기관간의 공유는 가능하지만 공개를 원치 않음
케냐	아동의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항은 공유가 불가능하다.
벨기에	N/A
그리스	<p>1)사건 날짜: 2018년 10월 2)판결 날짜: 2019년 6월 3)사건 개요: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착취를 당하고 나이 많은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함. 4)피해자(아동)의 주장: 아동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범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했다. 5)가해자의 주장: 가해자는 아동이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동이 남자친구와 성관계 한 것이라고 주장함. 6)검사의 주장, 7)법정의 최종판결, 8)판결의 이유: 가해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조사결과가 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9)관련 보도자료: 없음. 피해 아동의 주변에서는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p>
독일	<p>1)사건 날짜: 2014년 2)판결 날짜: 2019년 7월 3)사건 개요: 53세 남성인 가해자가 13세 아동에게 인터넷을 통해 십대 인척 접근하여 만남. 몇 번 호텔에서 만나 관계를 맺은 후 아동을 납치하여 사라짐. 5년 뒤인 2019년에 피해아동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연락하여 가족에게 돌아감. 가해남성은 이미 그의 부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접근을 한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와 있었음. 경찰이 그를 쫓아 100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 사례를 포착하여 체포함. 4)피해자(아동)의 주장: N/A 5)가해자의 주장: N/A 6)검사의 주장: N/A 7)법정의 최종판결: 6년 징역 8)판결의 이유: Section 174 형법: Abuse of position of trust (신뢰 관계에서의 학대), Section 235 형법: Abduction of minors from the care of their parents (부모의 보호로부터 아동을 유괴하는 행위</p>

	<p>9)관련 보도자료:</p> <p>https://www.dw.com/en/missing-german-teenager-returns-home-after-5-years/a-45313727</p>
오스트리아	N/A